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42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조은희 · 신성범 · 이성권

서천호 · 김재섭 · 김용태

박정하 · 김미애 · 박충권

조지연 · 배준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,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, 100m 이내 접근금지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 부착,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 음.

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 •변경·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 관서의 인지가 어려움.

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 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,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 회가 없음. 이에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, 잠정조치 행위에 스 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 등).

법률 제 호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7항 본문 중 "제4호"를 "제4호부터 제6호까지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"을 "제3호의2의 잠정조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, 같은 항 제5호·제6호의 잠정조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각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
- 6.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
- ⑧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⑨ 제1항제5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스토킹행위 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 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①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행한 상담소 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 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, 요양시설 및

상담소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검사와"를 "검사,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(이하 "관할경찰관서"라 한다)의 장과"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검사"를 "검사, 관할경찰관서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잠정조치 결정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취소,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| 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|
| 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| 조치) ① |
| 원활한 조사・심리 또는 피해 | |
|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| |
|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| |
|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 | |
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| |
| (이하 "잠정조치"라 한다)를 할 | |
| 수 있다. | <u>.</u>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5.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|
| | 시설에의 위탁 |
| <u><신 설></u> | 6. 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 |
| ② ~ ⑥ (생 략)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
| ⑦ 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3 | ⑦ |
| 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| |
| 3개월, 같은 항 <u>제4호</u> 에 따른 | 제4호부터 제6호 |
|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 | <u>까지</u> |
| 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 | |
| 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| |
|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| |
| 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 | |
| 2호·제3호 및 <u>제3호의2에 따</u> | <u>제3</u> |
| 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 | 호의2의 잠정조치는 두 차례에 |

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~ ③ (생 략)

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한정하여, 같은 항 제5호 · 제6 호의 잠정조치는 한 차례에 한 정하여 각 기간-----

- ⑧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. ⑨ 제1항제5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스토 킹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 는 제8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 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⑩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행한 상담소 등의 장은 그 결 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 탁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, 요양 시설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위 탁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잠정조치의 변경 등) ① 제11조(잠정조치의 변경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 조치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.

- 검사,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, 가족, 그 법정대리인: 취소,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
- 2. · 3. (생략)
- ⑤ 잠정조치 결정(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.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)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 <후단 신설>

| (4)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| |
| | |
| 검사,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| |
|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(이 | |
| 하 "관할경찰관서"라 한다)의 | |
| 장과 | |
| | |
| | |
| | |
| 1. 검사, 관할경찰관서의 장, | |
| | |
| | |
| | |
| 2. • 3. (현행과 같음) | |
| ⑤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이 경우 검사는 불기소 | |
| 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| |
|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| |